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채유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
이상훈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행 본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취득·처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 대비 취득의 경우 130% 이상, 처분의 경우 130% 이하이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□ 최근 3년간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시세는 146%~154%에 달하여 실질적으로 통상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 대비 130%를 상회하므로, 대부분의 취득(매입)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며 처분(매각)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, 기준가격 대비 감정평가액이 과다한 경우 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,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을 기준가격 대비 감정평가를 통해 계약하려는 금액으로 하고 그 범위를 완화하여 재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

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

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

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